

2023년도 제18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7. 27.(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강태욱위원, 위정현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7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반하람 주임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512건(안건번호 제2023-108407호~11191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08407호~108446호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08447호~108451호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최신 대체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 등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08452호~108454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책 등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08455호~108476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08477호~108478호는 웹하드 및 카페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08479호~11191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4,94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8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7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반하람 주임: 제2023-177회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반하람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5,15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3-108407호~111918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108407호~10844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뮤지컬의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42건임.
(안건번호 제2023-108419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수십 개의 비밀댓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3-108407호~108446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08407호~10844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08407호~108446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08447호~10845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및 ♣♣♣♣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인 '♥♥♥♥', '♡♡'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중인 사안 총 5건임.
(안전번호 제2023-10844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블로그의 직접 링크를 통해 '●●●● ●● ●●●● ●● ●● ●●●● ●●●●'를 거쳐 해당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됨.
직접링크가 게시된 사이트 총 10개 중 7개는 2022~2023년 중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 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해당 안전번호 제2023-108447호~108451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08447호~10845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08447호~108451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08452호~108454호는 관리자가 신고하고 보호원이 추가로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E-Book(전자책)을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4건임.

최근 ◆◆◆ 전자책 유출사건으로 전자책 무단배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판업계는 서점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이 E-Book을 판매하기는 어려운 점, 서점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이 EPUB파일의 기술적보호조치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제거하

고 판매하는 상황을 의심하며 보호원에 심의를 요청함.

(안전번호 제2023-108452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 ▲▲
▲▲▲▲ ▲ ▲▲▲▲▲(▲▲▲▲) ▲▲▲▲▲▲.(▲▲▲▲▲ ▲ ▲▲▲▲ ▲ ▲
▲▲▲▲ ▲▲ ▲▲▲▲▲ ▲▲ ▲▲▲▲▲.)”라는 제목과 함께 판매 설명
페이지에 “■ ■ ■ ■”을 포함하여 약 40개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
며 “▲▲ ▲▲ ▲▲▲ ▲▲▲ ▲▲▲ ▲▲ ▲▲▲▲”고 안내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108453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 ◆◆
◆ ◆◆ ◆◆◆◆◆◆◆ ◆◆◆(◆◆◆◆◆◆)”라는 제목으로 프리
랜서/아웃소싱 플랫폼인 크몽에서 8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
□□□.”의 전자책을 5천원에 판매하고 있음. 책의 작가는 크몽의
서비스 설명을 통해 고객의 상업적 이용 불가를 명시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108454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 ▼
▼▼ ▼▼▼ ▼▼▼▼▼▼▼▼▼▼(▼▼▼▼▼ → ▼▼▼) ▼▼▼▼”라는
제목과 함께 “▼▼▼▼ ▼▼▼▼▼▼▼▼▼▼”라고 안내하고 있음. 해당
전자책은 ○○○○, ●●●●와 같은 서점에서 39,6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페이지에는 “▼ ▼▼▼▼ ▼▼▼▼ ▼▼ ▼▼▼▼ ▼▼▼
▼, ▼▼▼▼▼▼▼▼▼▼ ▼▼▼▼▼ ▼▼ ▼▼▼▼▼▼▼▼.”라는
안내가 되어 있음.

무형물인 전자책의 재판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배포권
소진)가 적용되지 않고,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거래에 제공된 경우
에도 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함. 따라서 설령 게시자가 정상
적으로 전자책을 구매하였더라도 저작권자의 별도의 허락이 없이
구매한 전자책을 재판매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자가 직접 DRM을 무력화하였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자책을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뚜렷하여,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해당 안전번호 제2023-108452호~108454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전자책의 DRM을 해제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인가.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것으로 추정됨.
- C 위원: ◆◆◆ 전자책 유출사건 이후 전자책의 Epub 파일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의 전자책은 해킹으로 유출된 것인가?
- C 위원: 그러함. 이제 한달 정도 된 사건임.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3-108454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관리자 신고로 분류되어 있는데, 신고자인 ♠♠♠♠♠♠♠♠ 및 ♣♣♣♣♣

♠♠♠♠♠이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판매하고 있는 ‘▼▼▼▼, ▼▼▼▼▼▼▼▼▼▼’의 권리자인지가 의문임.

- 반하람 주임: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은 ♠♠♠♠♠♠♠♠♠ 및 ♠♠♠♠♠♠♠♠♠♠♠♠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온라인 보호부에서 관리자 신고로의 분류하여 심의요청함.
- C 위원: 출판 단체의 회원사 중 해당 책의 관리자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됨.
- D 위원: 이러한 전자책을 구매 후 이용하는 방법이 궁극함. 전자책은 제한된 프로그램에서만 작동 가능하지 않은가.
- 반하람 주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만으로는 구입 후 유통되는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epub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포털 검색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08452호~10845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08452호~108454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108455호~10847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 '☆☆☆☆', 및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29건임.

(안전번호 제2023-108455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제2023-108455호~108476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 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08455호~10847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08455호~108476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108477호~108478호는 민원인(실명 2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및 카페에 게시된 만화·영상(방송)의 불법복제물 총 26건임. (안전번호 제2023-10847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카페에서 영상(방송) '■■■■■■■■ ■■■■'의 16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 중임.
해당 안전번호 제2023-108477호~108478호의 26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08477호~10847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08477호~108478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3-108479호~11191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셀러브리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10184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 ‘셀러브리티’의 1화에서 12화 전체분량을 17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6. 30.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드라마임.
 (영화 ‘드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10847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드림’의 2시간 5분 전체분량을 33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4. 26.에 극장 개봉한 드라마임.
 (영화 ‘플래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11335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플래시’의 2시간 14분 전체분량을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6. 14.에 극장 개봉한 영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108479호~11191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3-108479호~11191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08479호~11191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08407호~108446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08447호~108451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08452호~108454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08455호~108476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08477호~108478호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3-108479호~11191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8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8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8. 3.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강태욱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